

『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년 11월 12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2년 11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02년 11월 16일

제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김 경 배

나. 제안이유

-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의 개정(2002. 1. 14)으로 인하여 수리계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로 이양되어 본 조례의 용어를 현행 법령과 맞게 통일하여 수리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명 “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시설관리조례”를 “구미시수리계조례”로 함.
- “농업진흥공사” 및 “농지개량조합”을 “농업기반공사”로 하고, “농지개량시설”을 “농업생산기반시설”로 함.
- “농지개량계” 및 “개량계”를 “수리계”로 하고, “농지개량계장”을 “수리계장”으로 함.
- “농지개량규약준칙”을 “수리계약준칙”으로 한다.

라. 참고사항

- 관련 법령: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완 진

-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의 개정 (2002. 1. 14)으로 수리계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“구미시농 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시설관리조례”를 “구미시수리계관리조례”로 변경하고,
- 조례의 용어를 현행 법령과 맞도록 통일하여 기존 조례를 도 조례 준칙에 의거 내용 전반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그리고 구미시 관내 용수원은 저수지 204개소, 암반관정 138개소, 양수장 106개소 등 총 448개소로서 각 용수원 별로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용수확보를 위하여 각 수리계 운영에 대한 구미시의 적극적인 지도·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